

#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용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4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용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 
구미경, 김규남, 김동욱,  
김영옥, 김영철, 김원태,  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 
남궁역, 남창진, 박상혁,  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 
박철성, 송경택, 신복자,  
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  
윤영희, 이병운, 이상욱,  
이종환, 임춘대, 장태용,  
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 
홍국표, 황철규 의원(35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울 시내 화재위험성이 높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등에 대한 지원 종류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 (안 제1조)
- 나.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, “소방설비등”, “관계인”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함. (안 제2조)
- 다.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함. (안 제3조)

- 라.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)
- 마. 소방설비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,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바.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6조)
- 사.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신청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. 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##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·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.
2. “소방설비등”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중 별표1의 설비를 말한다.
3. “관계인”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·점유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.

**제4조(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(보수·보강을 포함한다)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2

호의 경우는 제5조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1.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

**제5조(지원심사)**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건축물 관리대장(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)·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(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)
2. 설치비용 산출 근거 자료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대상, 설치비용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제2항의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.

**제6조(지원방법)**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소방설비등과 관련하여 설치비용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
2.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

**제7조(환수조치)**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2.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3.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소방설비등(제2조 관련)

구 분	소방설비등 종류
소방용수시설	소화전, 비상소화장치
소방시설	소화기구, 단독경보형감지기,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, 가스누설경보기, 유도등
안전시설	누전차단기,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

[별지 1]

##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

(신청인이 설치, 시장이 설치)

※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,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시
신청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장 소	대상명	용도
	주소	수용인원
신청 목적		
설치 필요성		
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용수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소화전 ( )
	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상소화장치 ( )
<input type="checkbox"/> 보수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소화기구 ( )
		<input type="checkbox"/> 화재알림설비 ( )
	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경보형감지기 ( )
	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상경보설비 ( )
<input type="checkbox"/> 보강	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화재속보설비 ( )
	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누설경보기 ( 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유도등 ( )
		<input type="checkbox"/> 누전차단기 ( )
	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차단기 ( )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
신청금액	설치비용(천원)	
	산출근거 (별도첨부 가능)	

「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 등의 설치·보수·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청구인

서울특별시 구 동 가 호 층 호

첨부서류	1. 건축물 관리대장(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) ·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(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) 2.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### 처 리 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별지 2]

##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시
신청인	① 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장 소	대상명	주 소
지원금 지급	지원금액 일금	원정(₩) 원정)
	② 예금주	은행명

「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산서 및 견적서 2.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(사진을 포함한다) 3. 통장 사본 4.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### 작성방법

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.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

1.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: 지원금 지급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이름, 생년월일, 은행명, 계좌번호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.
4.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	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 (80g/㎡)]